

제 안 설 명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령 군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권고안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개정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보조금 지급대상 기준과
지원금액을 일치 및 대규모 관광사업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사, 물류·도·소매업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투자유치 기업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둘째, 각종 보조금 지원의 지급대상 기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입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투자기업 지원 시 지원대상을 고령군민을 내국인으로 변경하고,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10명으로 완화하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한도를 1명당 월 100만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 투자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10 범위 내 지원 한도를 최고 10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개정에 따라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 지원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명칭 변경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사와 물류업 및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대규모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일

투자유치과장 김 세 희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투자유치과장)
제출 연월일	2025.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4-648호 「86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 개정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입지시설보조금, 고용·교육훈련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기준과 지원금액을 일치시켜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
- 대규모 관광사업 지원 한도 상향 및 물류, 도·소매업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근거 마련으로 관광·유통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물류사업 및 도·소매업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제7호)
- 나.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3~제4조의4)
- 다. 각종 보조금 지원 시 고용대상 기준인 고령군민을 내국인으로 변경 및 국내기업 지원대상의 지원기준인 신규 고용인원을 10명으로 완화하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한도를 1명당 월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12조~제13조, 제18조~제19조, 제21조~제22조)
- 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22조제2호)

- 마.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사 특별지원 규정 신설(안 제25조제5항)
- 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 투자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10 범위 내 지원 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25조의2제2항)
- 사. 물류 및 도·소매업에 관한 특별지원 규정 신설(안 제25조의3)
- 아.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 시설 지원 규정 신설(안 제28조의2)

3. 개정안 :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 국민위원회 의결 제2024 - 648호 「86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경상북도 및 도내 자치단체 조례 내용 비교

나.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예고완료(25. 3. 28.~4. 16), 특이사항 없음

다. 예산관련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별도 개선사항 없음

마. 규제영향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바. 기타 관련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도·소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제1항 중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내국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군민”을 “내국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군민을 20명”을 “내국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명”을 “10명”으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군민을 20명”을 “내국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명”을 “10명”으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20명”을 “10명”으로 한다.

제22조 중 “20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사업”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2항 중 “100분의5”을 “100분의10”으로 하고,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25조의3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류사업, 도·소매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 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2(유치기업 주변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u></p> <p>7. <u>“도·소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u></p> <p><u>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u></p> <p><u>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p> <p>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u></p> <p>2. <u>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p> <p>3.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p> <p>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p> <p>5. <u>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신 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기업이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민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군민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

----- 내국인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
----- 내국인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

--- 내국인을 10명 -----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1명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략)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군민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1명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생략)

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생략)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 이하 1회에 한하여 기업당 최고 5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② ----- 10명-----
----- 100만원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
----- 내국인을 10명 -----

-----.

② -----
10명-----100만원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

----- 10명-----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8조
부터 21조에 따른 관내기업 지원
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초과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도
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3. (생략)

제2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① ~ ④ (생략)

<신설>

제25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생략)

제22조(국내기업 지원대상) -----

----- 10명 -----

2. -----

-----신성장동력

사업

3. (현행과 같음)

제2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5조에 의한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신설>

<신설>

② -----

----- 100분의10
----- 100억원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류사업, 도·소매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2(유치기업 주변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각종 보조금 지원 시 고용대상 기준인 관내 주민을 내국인으로 변경 및 국내기업 지원대상의 지원기준인 신규 고용인원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 상향 (안 제12조~제13조, 제18조~제19조, 제21조~제22조)
- 대규모 관광사업 지원 한도 상향과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사, 물류, 도·소매업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안 제25조제5항, 제25조의2~3, 제28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각종 보조금뿐만 아니라 대규모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 한도를 상향하였으나, 실제 사례가 극히 드물어 (고령군 사례 없음) 실제 예산 집행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사, 물류, 도·소매업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나 향후 투자유치 시점과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실정임.

4. 작성자 : 투자유치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상용(054-950-6802)

관계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물류사업의 범위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4. 30.>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화물 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해상화물운송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항공화물운송업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
	화물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물류장비임대업	운송장비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반용기 임대업, 화물자동차임대업, 화물선박임대업, 화물항공기임대업, 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 컨테이너·파렛트 등 포장용기 임대업, 선박대여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물류컨설팅업	물류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 컨설팅, 자동창고, 물류자동화 설비 등 도입 관련 컨설팅, 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컨설팅
	해운부대사업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항만운송관련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종합물류 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③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그 시행자에게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및 지원시설의 운영자(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명칭 개정

-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참 고 자 료

- 국민위원회 의결 제2024 - 648호 「86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 - 648호
의 안 명 「86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대상기관 86개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4. 11. 25.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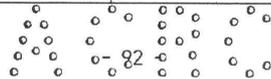
「86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86개 지방자치단체에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구분	조례명	① 부적격자 해촉	② 위원 연임제한	③ 심의 제척·회파기피
전남 목포시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전남 여수시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연임제한 없음	미흡
전남 광양시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규정 없음
전남 구례군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전남 보성군	보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전남 장흥군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전남 강진군	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전남 해남군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전남 영암군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전남 함평군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전남 영광군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경북 포항시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경북 김천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경북 구미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연임제한 없음	
경북 영천시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경북 상주시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규정 없음
경북 문경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경북 경산시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경북 의성군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경북 청송군	청송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경북 영양군	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연임제한 없음	
경북 고령군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경북 성주군	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 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경북 칠곡군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규정 없음	연임제한 없음	규정 없음
경북 예천군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 경상북도 및 도내 조례 비교

구 분	고령군	경상북도	영주시	안동시	예천군
외국인투자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 2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 2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 한도 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2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 2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 한도 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2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 2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 한도 6억원 	경북도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1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 1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 한도 1억원
외국인투자 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 2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 2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 한도 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2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 2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 한도 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2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 2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 한도 6억원 	경북도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1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 1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 한도 1억원
국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 2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 2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1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 1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2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 2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경북도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1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 1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국내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 2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 2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1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 1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2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 2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경북도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1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 1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구 분	고령군	경상북도	영주시	안동시	예천군
국내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2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50만원 이하 1회 지원 한도 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시 1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50만원 이하 1회 지원 한도 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2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50만원 이하 1회 지원 한도 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시 1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1회 지원 한도 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인 10명 초과하여 신규 고용 시 10명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한도 1억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시행사 지원 근거	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사 지원 규정 있음 물류단지개발 사업 시행사 지원 규정 없음 	경북도 동일	경북도 동일	경북도 동일
물류사업 및 도·소매업 지원 근거	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 있으나, 도·소매업 지원 규정은 없음 	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사업 (관광, 문화·지식서비스 사업 또는 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 있으나, 도·소매업 지원 규정은 없음 	안동시 동일
관광사업 등 대규모 투자 시설투자비 지원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사업 시설 투자비 최고 20억까지 지원 대규모 투자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 물류, 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 * 별표1 참조 대규모 투자 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사업 시설 투자비 최고 30억까지 지원 대규모 투자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최고 200억원까지 지원 	경북도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 서비스 사업 협회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내 지원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 * 별표2 참조
유치기업 주변기반시설 지원 근거	규정없음	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기업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영주시 동일	규정없음

[별표1] 경북도 관광 및 물류사업, 서비스산업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지 원 항 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액 (억원)
관광, 물류사업 투자보조금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20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40명 이상	30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80명 이상	40
	총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50
문화·지식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	총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5명 이상	5
	총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10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60명 이상	20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120명 이상	40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50

[별표2] 예천군 대규모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지 원 항 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액 (억원)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투자보조금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시	100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500명 미만시	500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시	1,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투자유치과	
연 락 처	(054) 950 - 6802